



전라남도
JeollaNamdo



녹색에너지연구원
Green Energy Institute

2025년 전남 에너지 혁신성장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

전라남도와 (재)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는 전남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·외 경쟁력을 확보하고, 전라남도를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같이 「2025년 전남 에너지 혁신성장 상용화 지원사업」을 안내하오니, 전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전라남도지사
(재)녹색에너지연구원장

1 사업개요

- (사업명) 전남 에너지 혁신성장 상용화 지원사업
- (목적) 에너지 혁신 기술 및 유망품목의 상용화 촉진과 글로벌 사업화 지원 통한 전남형 에너지 혁신성장기업 집중 육성
- (사업내용)
 - (혁신성장형 시제품 제작 지원)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품목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 - (기술선도형 국내·외 인증 지원)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·외 인증 비용 지원
 - (지식재산권 및 성능시험 지원) 제품 성능 검증,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비 활용 성능시험 및 권리능력 확보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
 - (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국내·외 전시회 참가 지원) 참가업체의 부스 임차료, 장치비, 운송료, 통역비 지원
 - (사업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) 제품, 기업 홍보를 위한 브로셔, 매뉴얼, 홈페이지 개선 등 마케팅 전방위 지원

□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 ~ 최대 2026. 5. 31.까지

□ (지원대상)

○ 지원범위: 에너지신산업 분야

– 태양광, 풍력, 이차전지, 전력 기자재, 수소 생산, 조력, 소수력 등

○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공고일(2024. 10. 4.)

현재 사업장(본사,지사,공장,연구소)*이 전남 도내에 소재한 기업

*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전남도 내에 위치하거나, 종된사업장 등록기업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

2 지원내용

□ (지원규모) 총 2.2억원 이내

지원프로그램	세부지원내용	기업부담금	지원금지급
시제품 제작	15,000천원 이내 / 10건	지원금의 10%이상(현금)	최종평가 후 지원금 지급 (기업요청 시 70% 선지급 가능)
국내·외 인증	10,000천원 이내 / 2건		
지재권·성능시험 지원	3,000천원 이내 / 3건		
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	10,000천원 이내 / 2건		
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	5,000천원 이내 / 2건		
홍보물 제작 지원	5,000천원 이내 / 2건		

※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달리 사업기간,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

□ (지원 프로세스)



※ 다만, 기업에서 선지급 요청 시,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필요

□ 기업부담금: 지원금 대비 기업 현금 매칭비율 10% 이상

구 분	신청 사업비(A)	기업부담금(B)	총사업비(C=A+B)
주 체	녹에연	수혜기업	녹에연+수혜기업
사업비	10,000천원	1,000천원	11,000천원

※ 부가가치세(VAT)의 경우 기업이 별도 부담

□ 지원프로그램 최대 2개 중복지원 가능

지원프로그램	세부 지원 내용	지원 규모
혁신성장형 시제품 제작 지원	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품목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	15,000천원 이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망품목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금형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- 에너지 전후방산업 유망품목의 금형설계 제작, 기공 등 테스트 샘플 제작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건 - 지원금액의 10% 이상 기업부담 VAT 별도
기술선도형 국내·외 인증 지원	사업화를 위해 개발된 제품 및 완성된 시제품의 국내·외 인증 지원을 통한 신뢰성 및 시장 경쟁력 확보	10,000천원 이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·외 인증 비용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건 - 지원금액의 10% 이상 기업부담 VAT 별도
지식재산권 및 성능시험 지원	사업화를 위해 개발된 제품 및 완성된 시제품의 검증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지재권 보호 지원	3,000천원 이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품의 성능 검증,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 기관 장비 활용 성능시험 지원 - 권리능력 확보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(특히 출원 및 등록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건 - 지원금액의 10% 이상 기업부담 VAT 별도
국내·외 전시회 참가 지원	국내·외 제품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	국외) 10,000천원 이내 국내) 5,000천원 이내
	▶ 국외 전시회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, 운송료, 통역비 지원 (전시회 참가 1개사 4부스 이내 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2건(총 4건) - 지원금액의 10% 이상 기업부담 VAT 별도
	▶ 국내 전시회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, 운송료 등 지원 (전시회 참가 1개사 4부스 이내 지원)	
홍보물 제작 지원	제품 시장진입 및 판매 촉진과 제품 수요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용 브로셔 및 매뉴얼 등 제작	5,000천원 이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품, 기업 홍보를 위한 홍보용 브로셔, 매뉴얼 제작 지원 - 기타 국내외 판로 개척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등 마케팅 전방위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건 - 지원금액의 10% 이상 기업부담 VAT 별도

3 추진 절차 및 제출서류

□ 추진 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함

□ 공고기간: 2025. 11. 3.(월) ~ 2025. 11. 28.(금)

□ 접수기간: 2025. 11. 3.(월) ~ 2025. 11. 28.(금), 13:00 限

□ 접수방법: zosoto9009@gei.re.kr 이메일 접수

(접수완료 확인 필수, 061-288-1143)

□ 문의처: (재)녹색에너지연구원 성과확산실 에너지산업육성팀

* 담당자: 최상현 팀장 (061-288-1141, krzzzz@gei.re.kr)

정혜연 선임연구원(061-288-1143, zosoto9009@gei.re.kr)

제출서류

No	제 출 서 류	비고
1	[서식 1] 사업신청서	
2	견적서, 비교견적서 1부	
3	[서식 2]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* 참여자 전원(대표자, 과제책임자, 실무담당자 등)	
4	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	
5	신청기업 4대 보험 가입자명부(2023년도, 2024년도, 2025년도)	
6	신청기업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(2022년도, 2023년도, 2024년도) *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	
7	국세 납세증명서 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	
8	지방세 납세증명서 * 정부24(www.gov.kr)에서 발급 가능	
9	[서식 3] 수행기업 부담금(현금) 출자 확약서	
10	[서식 4]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	
11	[서식 5]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12	[서식 6] 평가위원 추첨표 * 샘플 참조하여 작성	

*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며, 제출서류는 위 순서로 정리하여 스캔본 제출

4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

□ 평가방법

○ 1차 현장실태조사 (필요 시)

- 신청기업의 신청 자격, 기술개발 역량, 사업화 능력, 과제 중복성 등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실시

※ 현장실태조사는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신청 적격 여부만 판단

○ 2차 선정평가 (10분 발표, 질의응답 10분)

- 분야별 외부 전문가(5인 이상)를 위촉·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·선정
-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(부재 발생 시, 신청기업 참여연구원이 발표 가능하며 사전 통보 必)가 기술성, 사업성, 수행역량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
타당성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업필요성 (10점)■ 목표 및 추진내용 (20점)
사업성(5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업화(상용화)계획 (30점)■ 매출 기대효과 (20점)
개발역량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(10점)■ 사전준비 및 능력 (5점)■ 사업비 편성 (5점)

※ 평가점수 평균 최소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대상(가산점 포함)

□ 가산점 +3점 (전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연계)

○ 전남 지역혁신클러스터*(나주, 함평, 장성, 영광) 内 2025년 신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기업

*나주일반산업단지, 나주혁신산업단지, 신도일반산업단지,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, 빛그린국가산업단지(전라남도), 장성나노산업단지, 동합평일반산업단지, 나주동수농공단지, 나주오량농공단지, 장성 첨단 3지구(광주연구개발특구), 빛가람혁신도시(나주강소연구개발특구), 나주혁신산업단지(나주강소연구개발특구)

5 유의사항

-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.
- 계획서상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
- 신청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하나, 관리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는 추후 증빙 가능함.
- 사업은 협약기간 내 완료해야 하며 사업기한은 연장되지 않음.
- 지원 제외 대상 :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준 준용

1. 기업의 부도

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※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※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5.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
※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(신용등급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)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

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8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,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
9. 신청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(납부계획서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
○ 지원 취소 사유

-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
-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
-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
-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
- 지원 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 때 선정 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로 처리
-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 때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○ 사업비의 지급

-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 될 수 있으며, 지원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더라도 협약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음
- 협약 체결 후 선급(공급가액 기준, 70%)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선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보증증권을 제시해야 함
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,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-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(납부계획서)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
6 관련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
 -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
 -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
 -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·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
 -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
- 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